

-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334
------------	-----

2015년 6월 30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3월 17일, 이종필 의원 외 14명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15년 4월 20일 상정·보류)
-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15년 6월 3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종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택시운송사업에서 제복 또는 단정한 복장은 서비스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 의식결여와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, 승객의 신뢰감 증대를 위해 통일된 복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

여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시간에 복장을 통일하며,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『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』 제44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5. 3.25 ~ 2015. 4. 1

- 제출의견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) : 원안 동의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 이용 승객의 신뢰감 증대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할 경우 복장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관련 법령·조례 및 규정 검토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4조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「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와 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」 제10조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※ 참고 : 운수종사자 복장 등에 관한 근거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4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) ③ 법 제21조제9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.

[별표4]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(제44조 관련)

1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

가. 일반적인 준수사항

2)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.

2.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

차.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,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.

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(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)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

5.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「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」 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)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다. 검토 의견

- 서울시는 200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한 바 있으나, 2011년 4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¹⁾와 국토해양부(現국토교통부)의 ‘자율복장 시행’ 권고²⁾에 따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조합과 자치구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1년 11월부터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³⁾을 제외한 범위에서 자율복장으로 변경한 바 있음

※ 참고 : 2009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통일 시달 관련

- 2009년 7~8월 : 디자인 확정 및 운수종사자 복장지침 시달(서울시→택시조합)
 - 상의 : 지정복장 착용(※단, 조끼는 색깔을 달리하는 밝은 계통 덧옷 착용 가능)
 - 하의 : 단정한 신사복 형태
 - 신발 : 양말을 신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(※단, 슬리퍼는 착용 금지)
 - 시행일 : 개인택시(2009.7.27.), 법인택시(2009.8.6.)

법인택시		개인택시	
파랑색 줄무늬	하늘색 줄무늬	남청색 줄무늬	주황색 줄무늬
			

- 통일된 복장 착용시 택시 이용 승객의 신뢰감이 증대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어, 현재 서울시 택시

1) 국무총리실 보도자료(2011.4.18.) :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제 정비하기로

2)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-1540(2011.4.19.) :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규제 개선 요청

3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」 운수종사자 금지복장

- 상의 : 풀티, 소매 없는 셔츠(민소매), 런닝셔츠,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,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헨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
- 하의 : 반바지, 칠부바지, 츄리닝,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
- 모자 :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,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
- 신발 :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,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,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·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

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‘노·사·민·전·정 협의체4)’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통일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정과 추진 방식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

- 다만,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1년에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2벌에 대한 복장비 4만원이 이미 포함5)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통일시 복장 비용의 전액6) 또는 일부7)에 대해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이 되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,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
- 또한,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통일된 복장 도입시 권고만 하고 복장 비용을 지원할 경우 당초 의도했던 택시 이용 승객의 신뢰감 증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 강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된 복장에 참여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제 참여 여부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
-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8) 하였음

4) 택시물류과-20126(2014.7.23.) : “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수립 추진계획”에 따른 협의체 구성·운영

5) 운수종사자 복장비(1인당 2만원/년 × 2벌) : 267원/대/일

6) 전액(100%) 지원 시: 3,827,820천원

- 법인택시 : 총 2,346,180천원(상의 2벌: 60천원 × 39,103명)

- 개인택시 : 총 1,481,640천원(상의 1벌: 30천원 × 49,388명)

7) 일부(50%) 지원 시: 1,913,910천원

- 법인택시 : 총 1,173,090천원(상의 2벌: 60천원 × 39,103명 × 0.5)

- 개인택시 : 총 740,820천원(상의 1벌: 30천원 × 49,388명 × 0.5)

8) 택시물류과-9729(2015.4.8.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, ‘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’는 부분을 삭제하되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을 신설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코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34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30일

제안자 : 교 통 위 원 장

1. 수정 이유

-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, ‘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’는 부분을 삭제하되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을 신설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코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10조를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,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교통위원회)
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)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1조 ~ 제17조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 ~ 제18조 (현행 제11조로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영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정안(교통위원회)
제1조 ~ 제10조 (생략)	제1조 ~ 제10조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 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
<u>제11조</u> ~ <u>제17조</u> (생략)	<u>제12조</u> ~ <u>제18조</u> (현행 제11조로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